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22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조문별 검토	7
(1)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7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13
(3) 표시의무 및 벌칙 등	19
※ 참고자료	2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1.

다.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음악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현행법 제17조¹⁾제1항에 따르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²⁾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97조·제98조제1항제3호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2) 【2021년-2025년 6월말 기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일) 평균	처리기간 최소	처리기간 최장
2021년	1.94	1	4
2022년	2.20	1	5
2023년	2.15	1	4
2024년	2.30	1	4
2025년 6월	2.40	2	4

- 이에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배급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개정안은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자체등급분류된 영상물 등의 등급이 부적절한 경우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등급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³⁾
- 각 방송사의 자율등급분류제 외에도, 2011년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7년 전면 도입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OTT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영상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또한 음악산업 진흥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는 ‘2. 조문별 검토’ 참조

- 특히, 음악영상물은 다른 일반적인 영상물에 비해 그 길이가 짧고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으며, 독립된 콘텐츠로서의 가치 외에도 해당 음악영상물에 담긴 음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자체등급분류제의 도입 등을 통해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과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음원 홍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다만,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등의 경우와 달리 제작·배급사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는 ‘자율등급분류제’에 가까운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음악영상물 등은 일반적인 영상물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음악 콘텐츠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선정성·폭력성 등 유해요소가 포함될 가능성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비디오물 등 타 콘텐츠 분야에서도 등급분류 규제가 완화된 자체등급분류제가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음악영상물 등의 신속한 유통을 통한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자체등급분류 시기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임물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사업자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등급을 실제보다 낮춰 분류하여 선정성 논란 등이 제기된 사례가 있음. 연합뉴스, “청소년 게임 ‘와이프’ 선정성 논란... “자체등급분류 허점 악용””, 2022.1.5. 기사 등 참조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7.18. 의안번호 제2211581호)과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8.25. 의안번호 제221233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조문별 검토

(1)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가. 개정안 요지

-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외에도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근거 마련(안 제17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u>음악영상파일</u> 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u>관하여</u>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 <u>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제작</u> ----- ----- ----- <u>관하여</u> <u>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u> ----- ----- ---- <u>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u>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 등의 경우에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
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
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
2부터 제50조의8까지·제51조
부터 제56조까지·제65조·제6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제5호에 따라 음악영
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
는 경우
2.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
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
적으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하는 경우
3. 「방송법」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체심의
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4. 그 밖에 음악영상물 등의 제
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
어 보아 표시가 필요하지 아
니한 음악영상물 등으로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
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조 · 제9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제97조 · 제98조제1항제3호의2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 · 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구분,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목적 · 유통 특성 등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⁵⁾ 자체 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외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산업 현장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이 공개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사전심의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속

5)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업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등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 등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생략)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생략)
- 6) 현재 뮤직비디오는 실질적으로 4개구간(전체/12세/15세/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김승수 의원 발의안에서도 4개 구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 홍보·유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산업진흥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의 제작·배급자가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기 전에도 위원회에 통보 후 음악영상물 등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등급분류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물 등의 유통 이전에 등급분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문구 수정이 필요하고,⁷⁾ 개정안은 방송사 심의를 받은 경우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방송심의 후 방영된 프로그램이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현재 뮤직비디오는 실질적으로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 4개구간으로 분류되고 있으나,⁸⁾ 개정안은 등급분류 구간 등에 대해서 음악영상물에

7) 자체등급분류를 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필요

8)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는 아동 및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어 대부분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되고 있음.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뮤직비디오가 플랫폼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 등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는 그 특성상 음원·음반 홍보물 성격의 영상물로 짧은 상영시간과 유튜브 위주의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구간 세분화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간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 5년간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현황】

(단위: 편)

구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계
2020년	522	38	22	2	584
2021년	1,238	145	82	12	1,477
2022년	2,512	251	124	32	2,919
2023년	3,349	319	143	40	3,851
2024년	3,507	250	106	42	3,905
2025년 6월	1,391	121	59	23	1,5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가. 개정안 요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고, 등급분류 기준을 준수하며,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 등을 배포·게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자체등급분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등급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u> <u>1.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할 것</u> <u>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음악영</u>

<신 설>

상품 등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 등에 대하여 제25조 제2항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5.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7조의3(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

라 등급분류된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조정 명령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조정 명령에 앞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3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등급조정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급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음악영상물 등 등

	<u>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한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u> <u>2.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u>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 제17조의2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와 분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온라인비디오물 등 타 분야의 자체등급분류제 입법례와 유사한 내용으로,⁹⁾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17조의3는 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등급조정명령 및 등급분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유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 보호 필요성 등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평가됨.

- 다만, 개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조정명령 전에 시정

1. 제21조제10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10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¹⁰⁾에서도 직권재분류 및 등급조정 규정에 시정권고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시정권고 절차는 신속한 시정조치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표시의무 및 벌칙 등

가. 개정안 요지

- 음악영상물의 판매·자료제출 요청, 제한관람가 음악영상물 등의 유통 제한 등 사후관리 및 표시·통제 관련 조항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에 대해 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
-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음악영상물 등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등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와 등급분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제34조 및 제36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7조의4(준용규정) 음악영상물 등의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및 자료제출의 요청 등</u>

제25조(표시의무)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 ~ ⑥ (생략)

<신설>

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 등”으로 본다.

제25조(표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신 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 협회 또는 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①·② (생략)	<u>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⑧ <u>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단체</u>----- -----.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생 략)
2. ~ 4. (생 략)
- ④·⑤ (생 략)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음)

③-----

---.

1. 제17조의3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한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하여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 ①-----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 등 또는 등급을 -----
4. 제1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u><신 설></u> ② (생 략)	5. 제17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 을 위반하여 음악영상물 등을 시청에 제공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 제17조의4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¹¹⁾하여 복제권 확인, 불법유통 차단 등의 관리체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②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를 마련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 제25조는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에게 등급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상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개정안 제29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음악영상물 등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유통 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음악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완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안 제34조 및 제36조는 등급분류의무 위반 등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일관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6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1**해외 사례**

국가	등급분류 기구	기구 성격	심의성격	법률	주요 특징
미국	음반산업협회 (RIAA)	사업자협회	자율심의	×	사업자 자율규제
영국	영국영화등급분류위원회 (BBFC)	행정기관	자율심의	×	주요음악사업자와 협약
호주	등급분류위원회 (Classification Board)	행정기관	강제심의	○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 의무
네덜 란드	시청각매체 등급분류기구 (NICAM)	민간기구	자율심의	×	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정부기구
독일	영화자율규제기구 (FSK)	민간기구	강제심의	○	사업자 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혼합방식
프랑스	-	방송사	자율심의	×	방송사업자의 자율심의

* 출처: 음악영상물등급분류 제도연구(2023)

참고2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법률명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2 내지 50조의8)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업종</td><td>•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관리</td><td>지정제</td></tr><tr><td>지정기간</td><td>5년</td></tr><tr><td>요건</td><td>•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td></tr><tr><td>지정방법</td><td>•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td></tr><tr><td>준수사항</td><td>•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td></tr><tr><td>사후관리 및 제재조치</td><td>•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td></tr><tr><td>업무 적정성 평가</td><td>•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td></tr></table>	구분	내용	업종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5년	요건	•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준수사항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구분	내용																	
	업종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5년																	
	요건	•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준수사항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게임산업법 제21조의2 내지 21조의11)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업종</td><td>•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관리</td><td>지정제</td></tr><tr><td>지정기간</td><td>3년</td></tr><tr><td>요건</td><td>•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td></tr><tr><td>지정방법</td><td>•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td></tr><tr><td>준수사항</td><td>•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td></tr><tr><td>사후관리 및 제재조치</td><td>•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td></tr><tr><td>업무 적정성 평가</td><td>•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td></tr></table>	구분	내용	업종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3년	요건	•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	준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구분	내용																	
	업종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3년																	
	요건	•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																	
	준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 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838호)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738호)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 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항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 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항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④ 항 생략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6호) 직권등급재분류/분류취소, 등급조정요구 이행 포함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 ⑤ (생략)
--	---

참고4

사전등급분류제도 관련 업계 설문조사 결과(2023)

□ 사전 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 개선 필요 의견이 약 75.7% * (74개사 중 '매우 필요하다'(38개사), '필요하다'(18개사))

□ (주요 의견)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해소, 영세한 사업자 등급분류 어려움, 비효율적 절차 및 비용 부담 관련 의견 제출

-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해소 필요 관련 의견

No	답변 내용
1	심의 문제로 국내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등록하지 못하는 콘텐츠가 너무 많은 반면, 유튜브 등의 해외플랫폼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국내플랫폼에만 적용되는 사전심의제도의 번거로움 및 비용 등으로 유통사에서 국내플랫폼에 뮤직비디오공급(수량) 제한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해외플랫폼과의 서비스 품질차이 발생(=해외플랫폼에대한우호적고객인식발생)
3	YouTube등 해외플랫폼 대비 국내플랫폼이 역차별 당하고 있음
4	- 국내음원서비스사업자 역차별, 형평성 이슈 존재(국내음원서비스사업자만 사전심의 필수) - 현재 심의를 받지않은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만 서비스가 되고 있음 - 사후자율심의 제도로 개선하여, 창작자의 예술성 확대 필요

- 영세한 사업자의 등급분류 어려움 관련 의견

No	답변 내용
1	개인아티스트 및 군소레이블의 경우 현실적으로 방송사 심의접수가 어려움 (방송사 투입 리소스한계, 심의 접수거부)
2	각방송국마다 심의를 별도로 넣어야하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대형기획사만이 방송국에서 심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사는 방송국심의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음

○ 유통 지연 등 비효율적인 절차 개선, 비용 부담 관련 의견

No	답변 내용
1	원하는 일정에 뮤직비디오 공개가 어려움
2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음악의 글로벌 유통에 규제가 됨
3	제작사들이 적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지 못하여 사업상 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 제작사 등이 큰 피해를 봄. 뮤직비디오만 별도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남.
4	자체 심의를 할 수 없고 심의기관에 신청해야하는 프로세스 때문에 뮤직비디오 제작기간이 촉박할 경우 일정상 긴급하게 진행하는 어려움 존재
5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 국내 제작유통사들의 리드타임, 등고려 필요
6	영등위심의접수시, 심의기간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별도 접수비 발생 중
7	개인의 경우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기가 까다롭고, 심의기간 또한 오래걸리며, 심의진행을 하지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다. 제도가 편리하다면 많이 이용하겠지만, 접근성이 어려워지기에 점점 심의를 꺼리는 추세임
8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신규의 경우 정보를 얻기 어려움
9	심의 진행의 번거로움, 대중 없는 심의 소요기간, 방송사 심의와 영등위심의의 심의 표시방법이 각각 달라 혼동이 있음
10	절차상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소요기간 등)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11	다른 영상물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봄, 현행 뮤직비디오 사전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신속한 업무가 어려움
12	등급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받기도 어려움 간소화 필요
13	방송사에서 특정 장르에 대해 등급 심의를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음 영등위를 통해서 하려면 영상제작신고업을 따로 받아야 하고, 서류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움. 영등위에서는 뮤직비디오에 한해 수수료 1만원을 청구하고 있어 이 부분도 완만해졌으면 함
14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